

제214회 거창군의회(정례회)
제 3 차 본 회 의

(2015.12.22.(화) 10:00)

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(안) 심 사 보 고 서

산업건설위원회

〔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(안)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5. 11. 20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5. 11. 20.
- 라. 상정·의결일자: 2015. 12. 14. ~ 16.

2. 제안 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·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각 부서에서 설치·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에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거창군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함.

3. 2016년도 기금 개요

- 가. 관련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42조: 재산과 기금의 설치
 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: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
- 나. 운용방침
 -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·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·운용하는 특정 자금임.
 -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·투명성 확보

- 총괄부서: 기획감사실
 - 운용부서: 각 기금관리운용 부서
-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·운용

4.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

(단위: 백만원)

기금명	2015년말 현재액 ①	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2016년도말 조성액 ④=①+②-③	증감
		수입 ②	지출 ③		
합계 (3개)	7,606,919	614,288	702,700	7,518,507	△45,017
재난관리기금	813,862	452,220	378,000	888,082	74,220
중소기업육성기금	6,584,828	136,800	320,000	6,401,628	△183,200
옥외광고물정비기금	208,229	25,268	4,700	228,797	20,568

5. 심사의견

■ 안전총괄과: 재난관리기금 (P37)

-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, 2016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임.
- 2016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1,386만 2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2억 3,722만원, 보조금 2억원, 이자수입

1,500만원으로 총 12억 6,608만 2천원 조성계획이며,
지출 계획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 및 신설, 최신 재난
경보 시스템 구축에 3억 6,000만원, 인명 구조장비 보관창고
설치 1,300만원, 예치금 8억 8,808만 2천원, 보조금 집행
잔액 반납 500만원으로 총 12억 6,608만 2천원임.

- 모든 기금은 법정적립금 확보,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 용도에
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▣ 승강기경제과: 중소기업 육성기금 (P43)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으로
- 2005년도 6월부터 설치하여 적립목표액 100억원을 목표로 2016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예치금 회수 65억 8,482만 8천원과 이자수입 1억 3,680만원으로 총 67억 2,162만 8천원 조성계획이며,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금 이차보전 3억 2,000만원, 예치금 64억 162만 8천원으로 총 67억 2,162만 8천원임.

▣ 도시건축과: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(P49)

-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. 3. 29. 조례로 제정되었음.
-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일반회계 예치금회수 2억 822만 9천원, 이자수입 426만 8천원, 기타수입 2,100만원으로 총 2억 3,349만 7천원 조성계획이며,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영 470만원,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 2억 2,879만 7천원으로 총 2억 3,349만 7천원임.

6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7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